

산학협력초빙교수임용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산학협력 초빙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산학협력 초빙교수는 민간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(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)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하되 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<별표 1>에 따라 경력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.

제3조(임용절차 및 기간) ① 산학협력 초빙교수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임용한다.

1. 각 대학(원)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
2. 총장의 제청
3. 이사장이 임용

② 산학협력 초빙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임무) ① 산학협력 초빙교수는 임용계약서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재직기간 중 발표되는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본 대학교 산학협력 초빙교수임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용서류) 산학협력 초빙교수로 추천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
2. 이력서 1통
3. 학위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각 1통
4. 산업체 경력 증명서
5. 경력

제6조(임용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산학협력을 직무로 임용된 초빙교원은 산학협력 초빙교수로 한다.

<별표 1>

산학협력 교원 경력 완화 기준

구분	경력
경력 3년 완화	-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※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라도 산업체로 인정 - 기술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- 박사학위 소지자(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산학협 력 교수에 한함)
경력 2년 완화	- 석사학위 소지자(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산학협 력 교수에 한함)

※ 임용계약 시 경력완화 적용 사유 등 관련자료 첨부.